

[신 탁 계 약 서]

교보약사 매그넘1 전문사모투자신탁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8321)

제정 : 2012년 2월 27일
개정 : 2012년 3월 27일
개정 : 2012년 6월 1일
개정 : 2012년 6월 22일
개정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4년 5월 14일
개정 : 2014년 7월 29일
개정 : 2015년 10월 23일
개정 : 2016년 4월 20일
개정 : 2016년 8월 1일
개정 : 2017년 4월 12일
개정 : 2017년 6월 15일
개정 : 2017년 9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교보약사자산운용주식회사와 전담중개업자이고 신탁업자인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07.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에 관한 제한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사모형"이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9.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시행령 제271조에 의한 적격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2014.07.29, 개정 2017.4.12>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교보약사 매그넘1 전문사모투자신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2014.07.29>
4. 개방형
5. 추가형
6. 종류형
7. 사모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적격투자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매입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개정2012.06.22>
2. 종류 A-I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5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 혹은 법인
 - 나.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종류 C 수익증권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으로, 적격투자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매입자격이 주어지는 수익증권 <개정 2017.6.15>
4. <삭제 2015.10.23>
5. 종류 C-S 수익증권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전담중개업자 및 이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등 신탁재산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 중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6. 종류 C-F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7. 종류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외국의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개정 2017.09.07>

④이 투자신탁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교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신탁업자의 운용행위감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⑤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보수 이외에 운용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므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한다. <신설 2017.4.12>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①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②법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법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전담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중개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2014.07.29>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용자
3.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보관 및 관리 <개정2014.07.29>
4.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체결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 처분 등의 업무
6.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업무
7.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8.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또는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제4조의3(업무의 위탁) ①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신탁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2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장 수익증권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A-I 수익증권

3. [종류 C 수익증권](#)

4. [<삭제 2015.10.23>](#)

5. [종류 C-S 수익증권](#)

6. [종류 C-F 수익증권](#)

7. [종류 C-W 수익증권 <개정 2017.09.07>](#)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4.07.29>](#)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2014.07.29>](#)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2014.07.29>](#)

⑤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자는 그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27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수익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

적으로 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수익증권의 양도시 양수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제16조(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공매도 포함) 및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며,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자본이득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자산운용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 개정 2017.4.12>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3.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4.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및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이 집합투자기구는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한도 및 제한의 예외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1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4.07.29>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4.07.29>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3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개정2014.07.29>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2014.05.14>

③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을 위한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신설2014.05.14>

제23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49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24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새로운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2012.06.01, 2016.08.01>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2014.05.14>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2012.06.01, 2014.05.14, 2016.08.01>

②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개정2012.06.01, 2014.05.14, 2016.08.01>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 수수료, **성과보수금액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환매연기)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환매에 관한 사항이 정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인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 전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개정2012.06.01, 2016.08.01>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6장 투자신탁재산평가 및 회계

제28조(투자신탁재산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한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④집합투자업자가 기본운용보수 이외에 성과보수를 정한 경우 기준가격 산정시 성과보수 부분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고 수익자별 성과보수를 별도로 계산한다.

제30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최초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2월 31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1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에 수익자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제33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성과보수금액 및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10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36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분기 초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로부터 매분기 말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최초 보수계산기간의 경우에는 펀드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 분기말까지, 보수계산기간 중에 신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 초일로부터 그 만료일까지를 보수계산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2. 종류 A-I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개정 2012.03.27>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3. 종류 C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4. <삭제 2015.10.23>

5. 종류 C-S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6. 종류 C-F 수익증권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7. 종류 C-W 수익증권 <개정 2017.09.07>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
-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제36조의2(성과보수) <개정 2012.06.01>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 이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별도의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취득한다.

②성과보수의 지급조건,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성과보수 지급조건 : 수익자 계좌별 수익률이 목표수익률(Hurdle Rate)를 초과한 경우

- 가. 목표수익률(Hurdle Rate) : 보수계산기간 중 5.0%
 - 나. 수익자 계좌별 수익률 = (보수계산기간종료일의 1좌당 평가금액 / 보수계산기간초일의 1좌당 평가금액)-1
 - 2. 성과보수 산정방법
 - 가. 성과보수금액 : 기준금액 × Max[수익자 계좌별 수익률-Hurdle rate, 0] × 성과보수율(15%)
 - (1) 기준금액
 - 회계기간 종료시 : 계좌별 보유수익증권 원본금액 (재투자된 이익금을 포함)
 - 일부해지 또는 전부해지시 : 계좌별 해지원본금액(재투자된 이익금을 포함)
 - 3. 성과보수 계산기간 : 성과보수의 계산기간은 회계기간 초일 또는 수익자가 수익증권 매입시 매입 기준가격이 적용된 날 또는 성과보수 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 가. 회계기간의 종료일 (다만, ㉠ 수익자 계좌별 보유수익증권 평가금액이 원본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제3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익금의 분배가 유보되는 경우, ㉡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배 받은 이익금이 성과보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기 회계기간 종료일로 성과보수 계산기간의 종료일을 순연한다.)
 - 나. 수익증권의 일부해지일(해지분에 상당하는 성과보수 인출에 한하며, 환매 등 기준가격이 적용된 날을 말한다.)
 - 다.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일
 - 4. 성과보수 지급시기 : 판매회사는 이익분배금 또는 수익증권 해지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날에 이익분배금 또는 해지금액에서 성과보수를 공제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납입한다.
 - 5. 제3호 가목 및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성과보수의 징구를 유보하며, 유보된 성과보수는 제3호 단서에 따른 계산기간의 종료시에 징구한다.
 - 가. 제32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이 없는 경우
 - 나. 제32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이 성과보수금액에 미달하는 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
 - 6. 용어의 정의(이 조 이 항에 기재된 내용에 한한다.)
 - 가. "원본금액"이라 함은 성과보수계산기간 초일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 나. "평가금액"이라 함은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액과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 7. 이 조에 의한 성과보수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성과보수산정,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또는 집합투자업자와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 ③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보수 이외에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투자신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제36조의3(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①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3.03.18,2014.05.14,2016.04.20>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탁	팀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2003.01~2004.12 중소기업은행 주안복지점 -2005.01~2009.06 중소기업은행 자금운용부 주식 및 파생상품 운용 -2009.06~2010.06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

		-2010.07~2014.04 중소기업은행 자금운용부 주식 및 파생상품 운용
		-2014.04~현재 교보약사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팀

②이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는 다음과 같다.

집합투자기구명	기간	설정금액(억원)	누적수익률(%)
-	-	-	-

주1) 상기 누적수익률은 설정일 이후부터의 누적수익률임

제37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
2. 종류 A-I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0분의 0.40 이내 <개정 2012.03.27>
3. 종류 C 수익증권 : 없음
4. <삭제 2015.10.23>
5. 종류 C-S 수익증권 : 없음
6. 종류 C-F 수익증권 : 없음
7. 종류 C-W 수익증권 : 없음 <개정 2017.09.07>

제38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5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90일 미만: 이익금의 50% <개정2014.05.14>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14.07.29>

제39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제39조의2(전담중개업자 관련비용)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전담중개업자 관련 비용”이라 함은 제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말한다.

제8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40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41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④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43조(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2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4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집합
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집합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6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투자신탁평
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투자신탁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
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7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2014.07.29>

제48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교보약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옥 래 (인)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성 국 (인)